

# [제 1354 호]

2017년 3월 7일(화)

# 고양시보



##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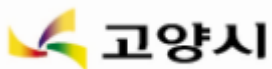
###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7-431호	고양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17-439호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7-43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식사2중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23
-------------------	--	----

# Goyang City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법무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예산법무과 재정기획팀(031-8075-230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고양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연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3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의안 상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제11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노 양 호
	팀 장 직위·성명	재정기획팀장 이 성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윤 중 (031-8075-2309)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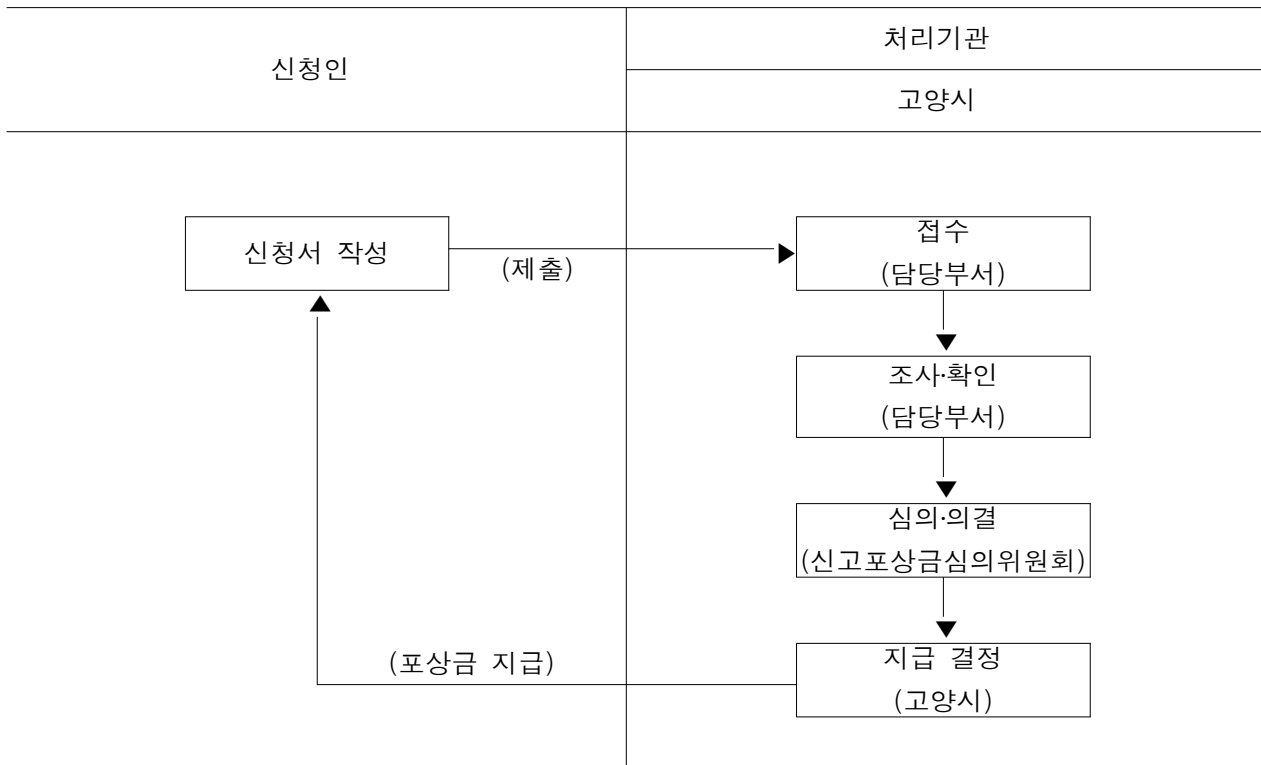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고 양 시 장

####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및 일산서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 통합방위 및 시민안전 지원 분야에서 소방서의 역할 증대에 따라 소방담당 간사를 신설하여 통합방위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 나.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소방담당간사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제4호)
- 다. 「통합방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031-8075-7041)
- 팩 스 : 031-8075-4930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22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로 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일산경찰서장”을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 하여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10호,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
10. 일산서부경찰서장
14.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찰담당간사 :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
4. 소방담당간사 : 고양소방서·일산소방서 소방행정업무 담당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시민안전과
입 안 자	담당관 성명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팀장 성명	민방위팀장 길영훈
	담당자 성명·전화	김선구 (031-8075-304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시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b></p> <p>① ~ ② (생략)</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 4. (생략)</p> <p><b>&lt;신설&gt;</b></p> <p>5. ~ 7. (생략)</p> <p>8. 일산경찰서장</p> <p><b>&lt;신설&gt;</b></p> <p>9. ~ 11. (생략)</p> <p><b>&lt;신설&gt;</b></p> <p>12. ~ 13. (생략)</p> <p>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경찰담당간사 : 고양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u></p> <p><b>&lt;신설&gt;</b></p> <p>4. <u>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시민안전과장</u></p> <p>⑤ (생략)</p>	<p><b>제1조(목적)</b>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p> <p>.....</p> <p>.....</p> <p>.....</p> <p>.....</p> <p><b>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u></p> <p>6. ~ 8. (현행과 같음)</p> <p>9. <u>일산동부경찰서장</u></p> <p>10. <u>일산서부경찰서장</u></p> <p>1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경기북부보훈지청장</u></p> <p>15. ~ 16. (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경찰담당간사 :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u></p> <p>4. <u>소방담당간사 : 고양·일산소방서 소방행정업무 담당과장</u></p> <p>5. <u>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u></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b>  <u>「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u>  <u>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u>  가. <u>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u>  나. <u>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u>  다. <u>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u>  라. <u>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u>  마. <u>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u>  바. <u>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u></p> <p>2. <u>적의 저공 및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u>  가. <u>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u>  나. <u>모래병커 또는 연못</u>  다. <u>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u>  라. <u>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u></p> <p>3. <u>적의 저공 및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u></p>	<p>&lt;삭 제&gt;</p>

## 도시계획시설(학교:식사2중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15-16호(2015.1.13.)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5-209호(2015.7.7.)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사항)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식사2중학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7.

### 고양시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
  - 가. 사업시행지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0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식사2중학교)
    - 명칭 : 고양 식사2중학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시 설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고양도시계획시설 (학교:식사2중학교)	○ 면적 : 9,529㎡	○ 면적 : 9,52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디에스디삼호(주)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 시행

시 행 자	주 소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5번길 146 D동 2호
디에스디삼호(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14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 31일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일산동구 식사동	1202	답	1,053	1,053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2		1202-1	장	1,524	1,524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3		1204	답	1,702	1,702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4		1204-2	답	260	260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5		1205	답	1,282	1,282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6		1205-1	답	629	629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7		1206	답	1,576	1,576	대한토지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8		1203	구	313	313	농림수산부					
9		1208-8	잡	435	435	기획재정부					
10		959-22	천	1,544	685	건설부					
11		959-23	천	70	70	건설부					
합 계				10,388	9,529						

※ 사유지 1202외 6필지는 원소유자가 디에스디삼호주식회사로 토지관리를 위하여 대한토지신탁(주)에 신탁한 토지임

##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